

석좌교수 규정

제정 2018. 01.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임용하는 석좌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석좌교수’라 함은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공적이 인정되는 인사 중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본 교의 교육목적상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에서 연구실적이 현저하고,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
2. 특정분야의 권위자로서 업적이 탁월하며, 본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기타 본 교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용절차) 석좌교수는 해당 스쿨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쿨 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5조(임기) ① 석좌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

1.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6조(구비서류) 석좌교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좌교수 추천서(서식 제1호)
2. 이력서(서식 제2호)
3. 연구실적서(필요시)
4.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

제7조(처우) 석좌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석좌교수에 대한 강의료 또는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임무)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 또는 연구
2. 특별강연, 세미나
3. 기타 본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호)

석좌교수 추천서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국 적		생년월일	년	월	일
현 소 속		직 위		연락처	자택: 회사: H P:
현 주 소					
전공분야					
희망임용기간	년		월	일 ~	년
희망 강의교과목 또는 특강					

위와 같이 석좌교수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스쿨 원장: _____(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귀하

(서식2호)

이 력 서

1.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국 적		병 역	필 · 미필 · 면제	
	생년월일	19 년 월 일 (만 세)		주민등록 번호	-		
	본 적						
	현 주 소	(우편번호: -)E-mail: ()			전 화 번 호	자택(국내)	
	현근무지					이동전화	
					국 외		
					직 장		

2. 학력사항

구 분	기 간	학 교 명	학 과 (세부전공)	학위 취득일	학위등록번호
학 사					
석 사					
박 사					
학 위 논 문	석사	지도 교수		논 문 제 목	
	박사	지도 교수		논 문 제 목	

3. 연구실적

발표구분	저자명(전원)	제 목	게재지명	발행기관	발 표 년월일

석좌교수 임용계약서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_____(이하 “을” 이라 한다.)은 석좌교수 임용에 따른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 “갑” 은 “을” 을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한다.
2. “을” 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3. “을” 의 보수액은 연 금 _____ 원(W _____)으로 한다.
보수액은 매월 금 _____ 원을 본 대학 보수 지급일에 분할 지급한다.
4. “갑” 은 “을” 이 계약기간 중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5. “갑” 은 “을” 에게 계약에 명시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을” 은 계약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 한다.
7. “갑” 은 “을” 이 법령, 규정 또는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신체, 정신적 사유로 강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갑” 은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 이 동의를 받아 계약서를 변경(계약기간 제외)할 수 있다.
9.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교 석좌교수규정에 따르며,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인)

(을) 성 명 : (인)